

---

#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아주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AJOU UNIVERSITY | Law School

# I 모집인원

총 모집인원	모집군	모집인원			비고
		일반전형	특별전형	계	
* 50명	가군	24명	2명	26명	비법학사 1/30이상, 타 대학 1/30이상 선발
	나군	23명	1명	24명	

- 지원자는 가·나군 모두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어느 하나를 택일하여 지원하여야 함
  - \* 2017학년도 결원인원 보충( '정원외 인원' 선발)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되며, 선발할 경우 별도의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선발함
  - \* 특별전형 중 1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가구(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가구에 해당하는 경제적 약자 지원자 중에서 우선하여 선발함.

# II 입학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입학원서 접수	2016.10.4(화) 09:00 ~ 10.7(금) 18: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a href="http://lawschool.ajou.ac.kr">http://lawschool.ajou.ac.kr</a>)</li> <li>• 유웨이(<a href="http://www.uway.com">www.uway.com</a>)</li> </ul>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지원관계서류 제출	2016.10.4(화) 10:00 ~ 10.12(수) 18:00까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 (종합관 3층)	직접방문 10월 12일 18시 또는 등기우편 10월 12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제출기간의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서류접수를 받지 않음
1단계 가군·나군 합격자 발표	2016.10.28(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a href="http://lawschool.ajou.ac.kr">http://lawschool.ajou.ac.kr</a> )	별도 개별통지 없음
면접 전형	가군 2016.11.7.(월)~11.13(일) 나군 2016.11.14.(월)~11.20(일)	아주대학교 종합관	구체적 장소/일시는 1단계 합격자발표시 개별조회
합격자 발표	2016.11.28.(월)~12.9(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a href="http://lawschool.ajou.ac.kr">http://lawschool.ajou.ac.kr</a> )	별도 개별통지 없음
합격자 등록	2017.1.2.(월)~1.3.(화)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은 추후 안내	
1차 추가 합격자 발표	2017.1.4.(수)~1.6.(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a href="http://lawschool.ajou.ac.kr">http://lawschool.ajou.ac.kr</a> )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통지함
1차 추가 합격자 등록	2017.1.9.(월)~1.10.(화)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은 추후 안내	
미등록자 발생 시 추가합격자 발표	2017.1.11.(수)~2.28.(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a href="http://lawschool.ajou.ac.kr">http://lawschool.ajou.ac.kr</a> )	구체적인 내용은 수시로 개별통지함
이중등록자 등록포기각서 제출 마감	2017.1.26.(목) 17:00까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 (종합관 308호)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
2017학년도 결원인원 확정일	2017.2.28.(화)		2017학년도 학생선발 완료

### Ⅲ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 1. 지원 자격

##### 1) 공통사항

- 2017년 2월 28일 기준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16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2016.10.7)이전 최근 2년 이내의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TOEFL, TOEIC, TEPS에 한함)을 치르고 지원관계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성적표 원본 제출이 가능한 자

##### 2) 특별전형

대 상	지 원 자 격
신체적 배려 대상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상 제1~6급에 해당하는 자(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 대상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가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구 복지급여 수급자: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가구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판은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4급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9.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
	10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본인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가족에 대한 사실상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11 「지방자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읍·면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6년 교육과정(입학~졸업) 이수자로서 경제적 취약한 계층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출신 제외>
	12 「아동복지법」에 따른 국내아동복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곳)로 아동복지시설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
	1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로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세대 소득 총액 3,000만원 미만으로 세대 전체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30만원 이하인 세대, 또는 '종합소득의 경우' 세대 전체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평균 10만원 이하이면서 세대 전체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30만원 이하인 세대를 의미함.
-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별첨】** 반드시 참조 바람
- ※ 특별전형 합격자는 3년 전액 장학대상의 자격이 부여됨. 단 신체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에 한함

## 2. 전형방법(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공통)

구분	법학적성시험 (LEET)	학부성적	영어성적	면접		비고
				서면평가	대면평가	
1단계	30%	20%	20%	-		1단계 5배수
2단계	1단계 성적(70%)			15% (서류전형10% +LEET논술 5%)	15%	

### [실질반영률]

전형요소	1단계 평가(정량평가)			2단계 평가(정성평가)		합계
	법학적성시험 (LEET)	학부성적	영어성적	서면평가	대면평가	
배점	30점	20점	20점	15점	15점	100점
기본점수	5점	10점	10점	0점	3점	28점
실질 반영점수	25점	10점	10점	15점	12점	72점
실질반영률	<b>34.7%</b> (25/72)	<b>13.9%</b> (10/72)	<b>13.9%</b> (10/72)	<b>20.8%</b> (15/72)	<b>16.7%</b> (12/72)	100%

## 3.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 1) 법학적성시험

$$\left\{ \left( \frac{\text{언어표준} + \text{추리표준}}{2} \times 0.8 \right) + \left( \frac{\text{언어백분위} + \text{추리백분위}}{2} \times 0.2 \right) \right\} \times \frac{25}{100} + 5$$

### 2) 학부성적 : 백분위 환산점수 × 반영비율(20%) × 0.5 + 10(기본점수)

- ※ 학위가 복수인 경우는 모든 성적을 평균하여 반영함
- ※ 졸업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일 직전학기 성적까지 반영함
- ※ 6년제 대학(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졸업자는 본과 전(全) 학년 성적만 반영함

### 3) 영어성적

-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TOEFL, TOEIC, TEPS)의 성적을 환산기준에 따라 각 전형별 영어성적 반영비율로 반영함(영어성적 = 성적반영점수 × 영어성적 반영비율)

<환산기준>

등급	TOEFL	TOEIC	TEPS	성적반영점수
1	105~120	900~990	766~990	100
2	101~104	865~899	720~765	98
3	99~100	850~864	700~719	96
4	94~98	815~849	657~699	94
5	91~93	795~814	635~656	92
6	88~90	770~794	613~634	90
7	85~87	745~769	593~612	88
8	82~84	720~744	571~592	85
9	79~81	690~719	549~570	82
10	77~78	670~689	534~548	79
11	74~76	640~669	514~533	76
12	71~73	615~639	496~513	73
13	68~70	590~614	478~495	70

※ 13등급 미만의 성적을 취득한 지원자의 영어성적 환산기준은 50점(성적반영점수) 반영함.

4) 면접전형

서면평가	대면평가	합계
50%	50%	100%

가. 서면평가

-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논술, 경력, 자격증, 사회봉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 학습능력, 법률가적 소양, 발전가능성, 사회적 책무성을 평가항목으로 평가

나. 대면평가

면접방법	평가영역	세부 평가비율
대면평가	가치관	10%
	인성	10%
	잠재력	10%
	열정	10%
	사고력	20%
	표현력	20%
	의사소통능력(논증력)	20%

※ 면접(대면평가)시 법학지식은 묻지 않습니다.

※ 면접(대면평가) 결시자는 다른 전형요소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 5. 동점자 처리기준

### 1) 1단계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함

### 2)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면접시험성적 상위자
- 2순위) 법학적성시험 상위자
- 3순위) 외국어성적 상위자
- 4순위) 학사학위과정 성적 상위자

## IV 입학원서 접수 안내

### 1.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사항

- 접수기간 : 2016.10.4.(화) 09:00 ~ 2016.10.7.(금) 18:00까지
- 접수처 : 본 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ajou.ac.kr>) 배너 링크 또는 유웨이 홈페이지(<http://www.uway.com>)
- 전형료

전형유형		전형료	1단계 불합격자 환불전형료
일반전형		250,000원	80,000원
특별전형	신체적 배려 대상자	250,000원	80,000원
	경제적 배려 대상자	50,000원	없음
	사회적 배려 대상자	250,000원	8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가 부담함.

### 2. 지원관계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6.10.4.(화) 10:00 ~ 2016.10.12(수) 18:00까지
- 제출처 : (우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종합관 308호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 입학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제출처로 2016.10.12.(수) 18시까지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2016.10.12.(수) 까지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제출시 유웨이 원서접수 후 출력되는 라벨을 봉투 앞면에 부착)

**V**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1	입학원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제출)</li> <li>■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출력하여 제출</li> </ul>
2	자기소개서	1부	<p><b>(최종 작성한 파일은 지원 관계 서류 제출 마감시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하여야 함)</b></p>
3	4년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졸업(예정)증명서</li> <li>■ 졸업증명서에는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li> <li>■ 복수학위(복수전공 포함)취득자는 각 학위과정의 모든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li> <li>■ 외국대학 출신자는 학력조회 자료,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각 1부씩 제출해야 함 <b>(학력조회 자료 양식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함)</b></li> <li>■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최종학력 증명은 ‘中國高等教育學歷調查報告’ 를 첨부하여야 함(<a href="http://www.chsi.com.cn">www.chsi.com.cn</a>)</li> </ul>
4	학사학위과정(대학) 성적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全)학년 총 이수학점, 평균평점, 만점평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평균평점을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li> <li>■ 복수학위(복수전공 포함)취득자는 각 학위과정의 모든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li> <li>■ 전적대학이 2개교 이상일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li> <li>■ 외국대학 출신자는 출신대학의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li> </ul>
5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원본</li> </ul>
6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 성적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EFL, TOEIC, TEPS의 성적표 원본(최근 2년 이내)</li> </ul>
7	경력·실적·자격증명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자에 한함(단, 대학입학 이후의 증명서만 제출받음)</li> </ul>
8	특별전형 지원자격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배려대상임을 입증하는 제 증명서</li> </ul>

## Ⅵ 합격자 발표/등록 및 이의신청

### 1. 합격자 발표

- 2016. 11. 28(월)~12.9(금) 본 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ajou.ac.kr>)
- 합격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별도의 개별통지는 없습니다.
- 합격자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2. 합격자 등록

- 합격자는 반드시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하며,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1차 추가합격자 등록이 마감되는 **2017.1.10(화)** 이후부터 결원 인원 확정일인 **2017.2.28(화)** 사이에는 등록포기자가 발생하는 대로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연락으로 이루어지며, 본인 확인을 위해 통화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 추가합격자의 등록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는 일정에 맞추어 공지합니다.
- 이미 등록한 자가 타교에 합격하여 이동 시, 타교 등록 전 반드시 본 대학원 교학팀에 등록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불합격자 이의신청

- 입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 대학원 입시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의 절차는 관련법령, 본 대학 및 본 대학원 관련규정과 학칙, 사정원칙 등에 의해 진행됩니다.

### 4. 기타 유의사항

- 종합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중병으로 인한 휴학 또는 군입대 휴학을 제외하고는 입학 후 1년간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입학 후 교과과정 이수 및 제반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따릅니다.
- 본 법학전문대학원과 동일한 군(‘가’ 군 또는 ‘나’ 군)에 속하는 타 법전원에 복수 지원하거나, 입학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입학원서 작성오류, 필수적 제출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고의적 누락, 서류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Ⅶ 유의사항

### 1. 지원자 유의사항

#### 1) 이중등록자의 등록포기각서 제출 마감일시 : 2017.1.26(목) 17:00까지

- 이미 등록한 자가 타교에 합격하여 이동 시, 타교 등록 전 본 대학원 교학팀에 등록포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포기각서는 늦어도 2017.1.26(목) 17:00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선발비율 유의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근거  
 법학 외 타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비법학사로 볼 수 있으며, 복수의 학사학위가 있는 수험생의 경우 비법학사 또는 법학사 분야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한 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법학사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관리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근거  
 타대학 출신 지원자란 원칙적으로 아주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교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사편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대학을 기준으로** 합니다. 타 대학출신 지원자의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관리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합니다.

#### 3) 입학전형 필수요소 위·변조자에 대한 조치사항

- 입학전형 필수요소(법학적성시험 성적, 학부성적, 공인어학 성적)를 위·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년간 법학적성시험(LEET)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4)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에는 반드시 본인에 관한 사항만 작성해야하며, 자기소개서 및 기타 제출서류 등에 본인 이외의 배우자 및 친인척의 신상(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유추 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경우 실격조치 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구분	기재내용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 기재의 경우	① 부모·배우자·친인척의 실명 기재 ② 아버지가 OO지방법원장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의 경우	① OOO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②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③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 2. 입학원서 접수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의무로 하며, 추후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와 관련하여 진위여부 확인 및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중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된 국문 번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입학원서에 기재한 일체의 사항은 입학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모든 전형요소의 성적 반영은 지원자가 제출한 원본 증빙서류에 근거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는 추후 발급기관을 통하여 확인하며, 지원자는 본 대학원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백분위의 확인을 위해 법학적성시험 시행기관에 자료요청을 하고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성적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백분위환산점수를 기재한 후 성적증명서 발급기관(학사관리팀, 교무지원팀)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대학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성적증명서 중 평점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학지원 당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최종 합격한 경우 대학졸업증명서를 2017.3.2.(목)까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관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 또는 입학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 3.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전형유형(일반전형, 특별전형)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출신대학(교), 학과(전공) 및 성적 등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학원서 및 수험표 부착용 사진파일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사진은 수험생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꼭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서접수기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동일 반명함판(3×4cm) 사진파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진을 입력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응시를 불허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시한까지 입학원서 작성과 전형료 결제까지 완료해야만 유효한 원서접수로 인정하며, 전형료 결제는 반드시 지원자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하고 입학원서(출력본)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서류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미비로 처리하고, 제출서류의 일부를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전형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전적대학이 2개교 이상일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출신대학, 학과(전공), 성적을 기재하는란에 모든 전적대학(학과)과 성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입학전형기간 및 등록기간 중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으로 변경사항을 알려야합니다.

## [별첨] 특별전형 지원자격 입증서류 제출 안내

### ※ 특별전형 지원자 유의사항

#### 1. 서류제출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제출이 가능한 것은 별도 명시함
- 제출하는 서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발급기관에 조회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2. 특별전형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자기확인서(소정양식)

#### 3. 특별전형 대상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에 속한 자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를 의미함.

-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세대 소득 총액 3,000만원 미만으로 세대 전체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30만 원 이하인 세대, 또는 '종합소득의 경우' 세대 전체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평균 10만원 이하이면서 세대 전체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30만원 이하인 세대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경제적으로 여건이 취약한 세대에 속한 자 증빙서류(공통)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부모·배우자)
- 최근 3년간 재산세(지방세·국세) 과세증명서(본인·부모·배우자)
-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본인·부모·배우자)
- 건강보험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가족전원의 보험증 사본)
-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본인·부모·배우자) 및 최근 3년간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본인·부모·배우자의 근로소득 없는 자의 경우)

선발유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신체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상 제1~ 6급에 해당하는 자(본인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본인)
경제적 배려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복지급여 수급가구 · 복지급여 수급자: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경감확인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상위계층 확인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적 배려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상이 등급 판정을 판은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증명서(등급기재, 담당자 연락처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유공자증명서(등급기재, 담당자 연락처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4급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상자증명서 (등급기재, 담당자 연락처 기재)</li> <li>○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li> <li>○ 학력인정확인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관계증명서 (부모)</li> <li>○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본인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가족에 대한 사실상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급여지급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소재 중·고교에서 6년 교육과정(입학~졸업) 이수자로서 경제적 취약한 계층 &lt;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출신 제외&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법」에 따른 국내아동복지시설의 자원경력이 있는 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로 아동복지시설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 자원경력 사실확인서</li> <li>○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또는 소속 사회복지사의 추천서</li> <li>○ 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 민주유공자 확인원</li> </ul>	